

# 300만 강원인 함께 '평창올림픽 성공' 꿈을 심었다

## 희망의 나무심기 특집 화보



지난 1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8그루 희망의 나무심기'에는 도내에서 500여명의 주민이 참가

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면서 본인의 이름이 쓰인 명찰을 단 나무를 심었다.

강원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강원을 푸르게, 더 푸르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부지방산림청, 강원도, 평창군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를 통해 심어진 나무들은 도개발공사에서 '희망의 숲'으로 가꾸어 동계올림픽을 찾는 세계인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소나무 씨앗 풍선에 담아** 한 참가자가 소나무 씨앗이 담긴 풍선을 신랄칭 캐릭터인 푸름이에게 나눠주고 있다.



**2018평창 파이팅** 강원일보 창간 70주년 및 제70회 식목일을 맞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2018그루 희망의 나무심기'가 지난 1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지사와 김시성 도의장, 이희중 강원일보사장, 김상표 올림픽조직위 부위원장, 연동열 국회의원, 심재국 평창군수, 전정환 정선군수,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신만희 도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주민과 공무원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여성 참가자들도 삽 들고** 여성 참가자들이 희망나무를 심고 있다.



**나무 심는법 설명** 권영록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이 참가자들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농악대 환영공연** 평창둔전농악대가 신명 나는 환영공연으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평창군 직원들 나무심기 앞장** 평창군 직원들이 스키점프대를 배경으로 희망 나무를 심은 뒤 함께 모여 올림픽 성공 개최를 염원하고 있다.

# 공사비 분담금 갈등에 '공동도급' 곳곳서 균열

월요기획 >> 14-15면

공사비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건설현장의 공동도급 파드너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민고 의지해야 할 대표사와 구성원사가 서로 적자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상대를 겨냥한 소송만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 턱없이 낮은 공사비에 시공 적자 떠넘기기에 '급급' 업체간 파드너십은 실종 '소송전' 끊이지 않아

<건설경제>가 지난 2011년 9월 작공한 인천소재 한 대형공사 현장의 공사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표사 A는 7개 구성원사에 비정상적인 공사비를 분담금을 떠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 이 공사는 A사의 저가투찰로 계약 직후부터 실행률이 105.5%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실제 실행률은 120%까지 치솟았다.

결과 A사는 약 310억원에 달하는 초과금을 구성원사 지분별로 분담금으로 청구했다.

일면 당연한 수순이나 구성원사가 말하는 속사정은 달랐다. 구성원사들은 A사가 청구한 공사비에는 공통비로 처리하기엔 부당한 항목과 지출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불분명한 항목도 상당부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A사가 청구한 원가 항목을 보면, 공사와 무관한 것들이 다수 눈에 띈다.

구성원사들은 이에 따라 복리후생비 중 13개 항목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의 개인 휴대전화요금과 항공권, 콘도사용료, 출퇴근 유류대과 하도급본 직영처리 항목 등이 원가로 처리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채권가압류로 맞서며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구성원사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가압류로 중공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며 "분담금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중소업체를 부도로 내모는 가압류는 해제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계속된 시공적자에 시달리는 현장의 쓸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업체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사들의 적자 떠넘기기에 고통받는 주권사들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익은 나눠도 적자는 주권사의 몫'이라며 등을 돌리기도 부지기수. 상습적으로 분담금을 미수하거나 기성금만 챙긴 후 고의 폐업하는 등 악덕업체 또한 많다는 것이다.

주권사가 가압류부터 걸고 나서는 이유도 한 톨의 손실이라도 만회하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이렇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끈끈한 파드너십은 사라진 지 오래, 소송전만 점입가경이다.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분담금 소송가액만 50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 업계로 시야를 확대할 경우 크고 작은 업체끼리 얽힌 분담금 소송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수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가 낳은 우물한 풍속도인 것이다.

방송권·최지희기자 skbond@

# 300억 이상 공공공사 사후평가 내실화 박차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의 내실화가 추진된다.

정부가 발주기관마다 제각각인 평가지침을 표준화하고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 신규 지정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중 '건설사업 평가 관리 및 활용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발주기관이 준공 후 3~5년 내에 해당 공사의 수효 및 비용편익(B/C), 공사비·기간, 안전사고, 설계변경, 민원, 하자 등을 종합평가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내실화 방안의 일환이다. 2006년 제도 도입 후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됐다. 다만 300억~500억원 공사는 수요예측이나 B/C점 등 경제적 항목을 뺀 간이평가만 진행했다.

### 오늘의 주요 일정

- ▶한국은행, 201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 ▶산업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높여 8개 서비스분야, 20개 업종 표준화 추진
- ▶공정위, 2개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근

## 국토부, 다음달 연구용역 착수 발주기관별 평가지침 표준화 전문관리기관 신규 지정 검토

행한다.

국토부는 현행 사후평가가 부실하다고 보고 사후평가 수행·관리주체별 역할과 업무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축적된 실적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분석해 다른 사업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후평가 전문관리조직이 없었다. 또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에 사후평가 수행실적에 대한 시스템 입력의무만 있을 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표준적인 작성지침이 없다 보니 사후평가서 작성도 발주기관별로 제각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사후평가서 작성 및 평가관리체계를 조사하고 선진 외국의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후평가 전문관리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후평가서 작성을 위한 표준 작성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표준 지침이 마련되면 수행실적을 분석·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든다.

전문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관리기관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축적된 사후평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 철도, 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생산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년마다 사후평가 분석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실제 미국의 건설산업연구소(CII)는 각 발주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후평가에 대한 실적자료는 총 455건에 불과하다. 올해 사후평가 대상 400여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년 300억~500억원 공사 80~100건, 500억원 이상 공사 20건 정도가 새로 사후평가 대상으로 추가되고 있다.

한편 건설공사 '사후평가'가 공사 수행자, 즉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시공사 선정자료로 쓰는 데 비해 '사후평가'는 시공물(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 추진 시 부실 방지와 사업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김태형기자

## 아하! 그렇구나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Q** A, B, C 3개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엔 D시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시공 방식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인 사이의 약정 내용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A사가 대표사이고, 지분은 A사 51%, B사 25%, C사 24%이며, 공사대금은 구성원들의 지분별로 구성원 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대표사인 A사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러자 B, C사가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A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발생한 기성공사금에 대하여 A사의 채권자인 E가 A사의 공사대금채권(A사 지분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이 사례는 A, B, C 3사의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각사의 지분별로 각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와 그런 경우 A사의 공사중단 이후 B, C사가 실제 공사를 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기성공사대금이 A사에도 귀속되는지 아니면 B, C사에게만 귀속되는지 하는 점이 관건이 된다. 우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이 각사의 지분별로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보자.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의 이혼을 그대로 적용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유재산에 해당하고, 그러면 구성원 전원이 전체 공사대금채권을 합유재산으로 가지게 되고,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별로 개별적인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들의 지분별로 각 구성원들의 계좌로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이 적용되고, 공동수급체는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을 각 구성원들에게 각 지분별로 개별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아, 그렇게

처리하게 된다(대법원 2009년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례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여 각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분별로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일부 구성원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구성원들이 공사를 한 경우에 그때 발생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귀속되는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 실제 공사를 한 B, C사는 그 공사대금은 모두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지분별로 A사에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도 타당한 면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자면 그와 같은 사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적인 사정이고,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A사도 자신의 지분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즉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어느 구성원이 내부 약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은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정산하여야 할 사정이지 그 사유를 들어 대외적으로 이미 발생한 어느 구성원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년107532).

다만 공사도급계약 자체에서 개별 구성원의 실제 공사수행 여부나 정도를 지분비율에 의한 공사대금채권 취득의 조건으로 약정하였거나, 일부 구성원의 공사 미이행은 이유로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 제명하도록 하여 그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아예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회사들이 시공한 시기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여전히 A사는 도급인에 대하여 지분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채권에 대하여 A사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곽동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